

財務會計 基準設定을 위한 方法論과 基準體系에 關한 考察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關한 規程」을 批判함—

高 廷 燮

<차 례>

- I. 序 論
- II. 現代會計理論의 概觀
 1. 會計의 情報理論化의 傾向
 2. 現代會計의 定義
 3. 財務會計와 會計基準
 4. 基本的 財務諸表와 利用目的
- III. 「原則」·「規程」의 諸不合理點
 1. 「原則」改正의 必要性
 2. 「規程」의 制定經緯와 不合理點
- IV. 財務會計基準의 性格·設定方法 및 體系
 1. 基準의 性格
 2. 基準의 設定方法
 3. 基準의 體系
- V. 結 語

I. 序 論

지난 10餘年間 우리의 會計實務을 指導하여 왔던 原理는 1958年 企業會計準則制定分科委員會가 中間發表하였던 「企業會計原則」(以下 「原則」이라고 한다.) 이었다. 그런데 이 「原則」이 여러가지 理由에서 改正이 되든지 또는 廢棄되고 여던 새로운 會計指導原理가 마련되든지 하여야 된다는 主張이 우리의 會計界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래서 財務部에서는 1973年初에 「原則」을 改正한다는 意圖下에서 이에 關한 作業을 關係專門家들에게 委屬하였었다. 그러나

그 뒤 어떤 理由에서인지 당초 「企業會計原則改正」으로 出發하였던 것이 1974年 7月 18日에 大統領令 第 7199號로 그 名稱이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以下「規程」이라고 한다)으로 變換하여 公布되게 되었다. 그 결과 1958年度의 「原則」은 그대로 存續하면서 별도로 「上場法人 등」에만 適用될 또 하나의 會計原則이 탄생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原則」의 改正 또는 廢棄와 새로운 原則 制定의 必要性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여기에 「上場法人 등」이란 限定的으로 適用될 會計原則이 과연 存在할 性질의 것이며 또한 「規程」의 方法이 되고 있는 證券去來의 目的인 「國民經濟의 發展과 投資者의 保護」(商法 第1條)를 어느 程度나 可能케 할 수 있도록 그 內容이 마련된 것인지 라는 문제가 새로이 우리에게 提起되게 되었다.

著者は 論結적으로 「規程」은 存在할 性질의 것이 못되며 그 「規程」의 內容이 「國民經濟의 發展과 投資者의 保護」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原則」의 改正보다는 이를 廢棄하고 우리의 모든 會計界의 實務의 規範이 될 새로운 「財務會計基準」을 制定하는 것이 要求된다고 본다. 이 論文은 이러한 論者의 主張을 뒷받침하는 諸理由를 提示하고 同時에 새로이 制定될 財務會計基準의 具備하여야 할 性格, 그것의 設定方法 그리고 그 體系와 內容을 考察하려는 것이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가지고 먼저 論者は 1960年代부터 일고 있는 會計의 情報理論化의 傾向을 論하면서 現代의 財務會計를 定義하고자 한다. 그 다음 「原則」과 「規程」이 갖고 있는 論理的인 矛盾性 그리고 各자의 不合理性이 分析될 것이며, 끝으로 財務會計基準이 어떤 方向으로 制定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論者의 見解가 提示될 것이다.

II. 現代會計理論의 概觀

1. 會計의 情報理論化의 傾向

20世紀 後半까지도 會計界에서는 “知的” 또는 “理論的”이라는 表現을 侮蔑과 嘲笑의 的으로서 여기는 移神風土였던 美國에서 1960年代에 이르러 會計의 原理的 研究가 활발하게 進行되기 始作하였다. 그 호시는 1957年 5月 New Orleans에서 開催되었던 美國公認會計士協會(AICPA)의 年次總會에서 當時 會長이었던 Alvin R. Jennings가 講演한 「財務報告에 있어서의 今日的 挑戰」(Present-day Challenges in Financial Reporting)¹⁾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傳統的인 會計는 公式化(formalization) 할 수 없는 하나의 技術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相互不一致하는 多數의 原則과 實務의 集成體(Collection)에 對한 것이었기에 오늘에 와서 挑戰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Jennings는 따라서 會計理論化를 위한 基礎的 研究의 必要性을 力說하였다. 그 뒤

1) 그 內容은 같은 題目으로 1958年 1月號의 Journal of Accountancy에 發表됨

AICPA에 研究計劃特別委員會 (the Special Committee on Research Program)가 組織되었고 研究의 初程은 Moonitz에 의한 「會計의 基礎的 公準」(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²⁾에 關한 研究로서 장식되었으며 계속해서 많은 會計學者 및 會計實務家들에 의한 研究들이 進行되게 되었다. 특히 Moonitz의 公準研究는 傳統的인 技術指向的 接近法(technique-oriented approach)을 버리고 問題指向的 接近法(problem-oriented approach)을 採用한 行動科學的 接近이었다.

한편 美國會計學會(AAA)에서도 會計理論委員會를 設置하여 原理研究를 進行하였던 바, 1958—59年 2年間의 研究結果가 發表되었다. 그 中 Devine의 方法論의 提起³⁾와 이에 對한 Bedford와 Dopuch의 反論⁴⁾은 會計理論接近의 方法論爭의 火口를 열게 하였다. 이들 모두는 程度의 差는 있으나 行動科學的 接近法을 反映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Bedford는 Baladouni와 더불어 1962年에 會計理論 形成에 커뮤니케이션理論을 適用하는 方法論을 主張하였다.⁵⁾ 이 들 行動科學的 接近이나 커뮤니케이션理論接近이나 그 모두는 會計를 情報理論(Information Theory)의 一分科로 定立하려는 努力이었던 것이다.

그 뒤 AAA는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를 組織하고 Charles T. Zlatkovich를 委員長으로 하고 9名의 會計學者를 委員으로 하여 「基礎的 會計理論에 關한 報告書」(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略稱 ASOBAT)를 研究作成토록 하였다. 이 ASOBAT의 目的은 ① 會計에 關한 有用한 一般化를 試圖하고 그 理論을 發見시키기 위해서 會計의 領域을 確定하는데, ② 會計情報를 處理하는데 利用될 基準를 設定하는데, ③ 會計實務에서 改善할 可能性이 있는 것을 發見하는데, ④ 會計研究家로 하여금 增大하는 社會의 要求에 副應해서 會計를 利用하고 그 取扱範圍의 擴大方向을 探究하도록 有用한 理論體系를 呈示하는데 있었다.⁶⁾ 특히 注目할 點은 이 報告書는 過去의 「AAA會計基準」 및 「補足報告書」등과는 전혀 달리 過去·現在·未來의 社會에서의 經濟活動을 表現하는 資料의 測定과 傳達이라는 하나의 情報理論으로서의 會計理論을 定立하였다는 點이다.

그뒤 美國의 會計學界에서는 ASOBAT가 契機가 되어 數 많은 情報理論的

-
- 2) Maurice Moonitz,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1, AICPA, 1961.
 - 3) C.T. Devine, "Research Methodology and Accounting Theory Formation,"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0).
 - 4) N. Dopuch & N.M. Bedford, "Research Methodology and Accounting Theory Another Perspective,"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61).
 - 5) Norton M. Bedford & Vahe Baladouni, "A Communication Theory Approach to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2).
 - 6)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op. cit., p. 1.

인 會計學研究論文이 發表되게 되었으며⁷⁾ 1970年代에는 가리 會計學革命의 年代가 될 것이 豫想되고 있는 것이다. Mattessich는 1970年代의 會計를 展望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會計史에서의 지난 15年間이란 分散的인 傳統的 接近法(loose traditional approach)을 嚴格한 方法(rigorous methods)으로 轉換하는 過渡期의 一部이었다고 하겠다. 이는 상당한 期間에 걸친 일이었으나 이러한 轉換은 아마도 1980年代로 인계되어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會計學革命에서의 分歧點의 主原因이 될 것임에 틀림이없다. 컴퓨터技法 보다는 思想의 變化(a change of spirit)가 이러한 추세에 內在하고 있는 主된 힘인 것이다⁸⁾

2. 現代會計의 定義

원래 情報理論은 物理學에서 起源한 것으로 電子工學 分野에서 完全히 開發 定立된 것이다. Lev이 말하는 바와 같이 “情報理論은 主로 하나의message에 包含시킬 情報의 量을 定義하고 測定하는 것을 指示하는 것이다.” 이 理論의 主된 目的은 “1 transmission Channels의 最適規模를 決定하기 위한 分析의 手段을 提供하고, 2 message에 包含되는 ‘雜音’(noise)의 效果를 極小化하고 3 message에서의 redundancy(理論上 送信可能한 最大한의 情報量과 實際情報量과의 差)의 量을 決定하는데 있는 것이다.”⁹⁾ 이러한 情報理論의 一分科學(a discipline)으로서의 會計의 主目的은 “費用·收益의 對應을 통한 期間利益의 客觀的 算定”이 아니라 “意思決定에 有用한 情報의 提供”에 있는 것이다. 이 會計의 「모델」을 圖示하면 圖1과 같을 것이다.

會計擔當者는 한 經濟實體에 關하여 經濟的인 意思決定(判斷行爲를 包含)을 하고자 經濟的 情報을 必要로 하는 多數人에게 目的適合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會計擔當者(發信者)는 利用者들의 ① 情報利用의 目的을 確認하여야 하며, ② 利用者들의 意思決定의 結果로 발생한 또는 발생하리라

7) 그 代表的 論文은 다음과 같음 :

① N.M. Bedfo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pects of Accounting Principles," New Zealand Society of Accountants, New Zealand, 1967.

② N.M. Bedford and M. Onsi, "Measuring the Value of Information-An Information Theory Approach," Management Services (January-February, 1966), pp. 15-22.

③ C.L. Bostwick, "The Use of Information theory in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 XLIX (June, 1968), pp. 1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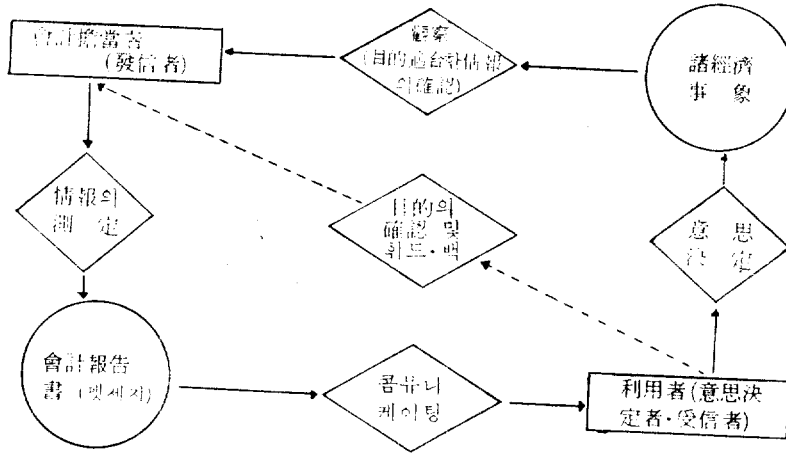
④ J.A. Caspari, "Fundamental Concepts of Information Theory," Management Accounting, XLIX (June, 1968), pp. 8-10.

⑤ Baruch Lev, Accounting and Information Theory, Studies in Accounting Research 2 (AAA, 1969).

8) Richard Mattessich, "Methodological Preconditions and Problems of a General Theory of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July, 1972), p. 469.

9) Baruch Lev, op. cit., p. 1.

圖 1 會計의 모델



豫想되는 諸經濟事象을 觀察하여 目的適合한 情報을 確認하고, ③ 確認된 情報을 測定하고, ④ message(會計報告書)를 作成하고, ⑤ 利用者에게 「커뮤니케이팅」(發信)한다. 利用者(受信者)는 ⑥ 그 情報을 基準으로 意思決定을 하며, ⑦ 受信한 情報이 目的適合한 것이 못될 경우에는 發信者에게 이를 「위드·백」한다. 따라서 會計를 다음과 같이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情報利用者로 하여금 合理的인 判斷과 意思決定을 하도록 經濟實體의 經濟的情報를 確認하고 測定하고 「커뮤니케이팅」하는 行動的 過程¹⁰⁾

이 定義가 지니는 特性은 다음과 같다: ① 會計가 提供하는 情報의 利用者는 不特定多數人으로서 經營者 株主 또는 債權者에 局限되지 않는다. ② 會計主體는 個個의 經濟實體(economic entities)이며 企業에만 局限되지 않는다. 이때의 經濟實體란 「特定한 目的을 追求하기 위하여 結合된 人間과 經濟的 資源의 組織, 制定 또는 活動單位」¹¹⁾를 말한다. ③ 情報利用者들의 利用目的은 「資源配分에 影響을 미치는 合理的 判斷과 意思決定에 있다」¹²⁾. ④ 會計情報

10) 이 定義는 ASOBAT의 그것과 그 思考面에서는 전혀 同一한 것이다. ASOBAT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A.A., 1966), p. 1.

“...the process of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economic information to permit informed judgments and decisions by users of the information.”

11) 松尾憲橋 譯,サルモンソン 現代會計學 (Basic Financial Accounting Theory, by R.F. Salmonson, 1969) (同文館, 昭和 46年), p. 51.

12) The Report of the Study Group on Introductory Accounting, A New Introduction to Accounting (Price Waterhouse Foundation, 1971), p. 11.

의 성격은 過去·現在·未來에 관한 經濟的인 것이다.¹³⁾ 이것은 ASOBAT의 思考로서 특히 「財務的」이란 表現 대신에 「經濟的」이란 用語를 使用하는 것은 ASOBAT作成委員의 한 사람이었던 Sorter 教授의 이론 바 「事象論的接近法」(the event theory)¹⁴⁾을 反映한 것이다. ⑤ 會計擔當者의 機能은 確認·測定 「콤뮤니케이팅」이다. 確認이란 聯關性(目的適合性)있는 情報源(經濟事象)의 選別過程(Selecting Process)을 包含하는 會計士의 意思決定過程¹⁵⁾을 말한다. 測定이란 「數(number)와 數間의 關係를 利用해서 實世界의 現象을 表現하는」¹⁶⁾, (Principal)의 寫體化(Surrogate) 過程이다. 그리고 「콤뮤니케이팅」이란 測定產物을 有意義하게 傳達하는 過程을 말한다. 끝으로 ⑥ 會計는 「人間行爲(human conduct)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行動的(behavioral)인 것이며, 어떤 目的을 達成코자 하는 일련의 相互作用이므로 하나의 過程(Process)인 것」¹⁷⁾이다.

3. 財務會計의 會計基準

會計基準(原則)이란 會計擔當者가 會計情報로 確認하고 測定하고 「콤뮤니케이팅」하는데 支配되는 規範이다. 이러한 會計基準은 會計情報의 利用者가 누

13) Chambers는 이와는 달리 「會計情報는 事實性(actuality)을 使命으로하더 可能性(potentiality)을 內包하지 않으며」(吉田寬, 「チエンバース, 會計學說」, 江村稔 編著, 變動期, 現代會計, 昭和 44, p. 165), 「測定을 하는 것이 會計士의 일이며 豫測을 하는 것은 行爲者의 일이다」(Raymond J. Chambers, 「Measurement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65, p. 33)라고 그의 獨特한 Continuously Contemporary Accounting 理論을 展開함.

14) The event theory는 the value theory에 反對되는 것으로서 「會計目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意思決定 「모델」에 有用한 關聯性 있는 經濟事象들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으며... 未知의 意思決定 「모델」을 위해 投入價値(input values)를 算出하는 대신 會計는 利用者 스스로 個個人의 意思決定 「모델」을 위해 投入 價値를 算出할 수 있도록 聯關性 있는 經濟事象에 관한 情報를 提供하여야 하며... 會計士보다는 오히려 利用者가 자기의 豫測과 用途에 맞도록 그 資料를 aggregate 하고 重要도와 價値를 賦與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Sorter의 要旨이다 :

George H. Sorter, 「An 'Event' Approach to Basic Accounting Theory,」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969), p. 13.

15) 一般의으로 意思決定은 利用者의 意思決定(User decisions)과 會計士가 行하는 意思決定(accounting decisions)으로 區分된다. 後者は 두 階層에서 行하게 되는데 하나는 會計專門家(accounting profession)가 行하는 會計基準의 設定行爲이고, 다른 하나는 個個의 會計士가 行하는 會計基準適用方法의 選擇行爲이다 : Homer A. Black, John E. Champion & R.G. Brown, Accounting in Business Decision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7), pp. 9—10 參照.

16) 井尻雄士, 會計測定, 基礎——數學的·經濟學的·行動科學的 探究——(東洋經濟新報社, 昭和 44), p. 25.

17) Vahe Baladouni, 「The Accounting Perspective Reexamined,」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6), p. 216.

구나에 따라 그 內容과 必要度を 달리 하게 된다. 이 點에 대해서 Anthony는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管理會計와 財務會計의 本質的인 差異는 前者는 後者만큼 “一般에 認定된 原則”에 支配받을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投資家들은 情報를 選擇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이 提供하는 情報를 通常的으로 受領 하는바 그들은 자기가 읽는 모든 報告書들이 一定한 既知의 基本法則에 따라서 作成되고 合理的으로 容觀的인 情報를 기초로 한 것임을 保障할 수 있기를 願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그 數值의 意味를 理解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經營者들은 스스로 基本法則을 만들 수 있고 施行할 수 있다. 즉 內部目的에서는 단일 다른 法則들이 보다 有用하다면 AICPA나 SEC가 마련한 原則을 따를 必要가 없는 것이다.¹⁸⁾

會計情報의 利用者群은 이러한 理由로 해서 한 組織의 外部利用者群과 內部利用者로 區分되게 되며 前者가 필요로 하는 情報를 提供하는 會計를 財務會計라고 하고, 後者가 필요로 하는 情報를 提供하는 會計를 管理會計라고 하는 것이다. 外部利用者들은 한 經濟實體와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그 經濟實體의 經濟活動과 變遷을 直接 觀察할 수 없고 다만 會計가 提供하는 情報인 寫體를 통하여 그 變遷을 豫想할 뿐이다. 그러나 內部利用者인 經營者는 實體와 近接하여 있으므로 有意義性을 갖는 事象들이 發生하게 되면 直接 그것을 觀察할 수 있다. 그래서 會計情報는 특히 한 組織의 外部利用者群에게 重要的인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寫體만을 利用하므로 그 寫體가 그들에게 事前에 알고 있는 一定한 “認定할 수 있는 健全한 會計基準”에 따라서 操作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寫體의 意味를 理解할 수 없게 된다. 또한 外部利用者集團들은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異質的인 集團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會計情報를 「컴뮤니케이팅」하는 問題는 內部利用者에게의 그것보다 한층 더 複雜한 것이다.

위와같은 事實로 말미암아 오늘날 까지의 會計理論이나 會計基準에 關한 研究는 주로 財務會計의 그것에 局限된 것이었으며, 本 論文도 財務會計에 局限된 會計基準에 關한 考察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4. 基本的 財務諸表와 利用目的

會計는 言語나 法律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社會的 「시스템」으로서 그 環境에 適應해서 發展하는 傾向이 있다. 따라서 財務會計의 最終產物이며 情報利用者에게 情報를 傳達하는 手段인 財務諸表를 利用하는 目的自體도 環境에 따라 變動할 수 있다. 그러나 會計擔當者가 會計行爲(確認, 測定, 「컴뮤니케이팅」)를 遂行하는데 支配되는 會計基準의 設定은 그 利用目的의 確認을 前提로 하

18) Robert N. Anthony, *Management Accounting: Text and Cases*, 3rd Ed., (Homewood, Ill.: Richard D. Irwin, Inc., 1964), pp. 270—271.

여야 하므로 現在의 外部利用者들의 財務諸表의 利用目的이 糾明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解로 이제까지 「財務諸表의 目的」을 主題로한 專門機關의 研究가 많았다.¹⁹⁾

그러나 이들 研究들은 그 研究의 範圍나 接近方法 등이 滿足스러운 것이 못 되어 最近에 AICPA에서는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를 組織하고 이 Group로 하여금 財務諸表의 目的을 새로이 調査 研究토록 하였다. 2年間に 걸친 研究結果가 지난 1973年 10월에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란 標題로 發表되었다. 同 研究는 研究에의 參加者範圍나 그 接近方法 그리고 意思의 綜合節次 등의 面에서 從來의 어느 다른 財務諸表의 目的에 관한 研究 보다 廣範한 것이었다.²⁰⁾ 이 研究는 主로 美國의 財務的 環境에 集點을 둔 것이었으나 그 研究 結果의 大部分은 우리 環境에도 適用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그 要旨를 紹介하고자 한다.

同 Group는 다음의 세가지 假定에서 財務諸表의 目的을 論理的으로 導出하고 있다: ① 財務諸表의 利用者들은 그네들의 經濟的 意思決定의 現金結果(the cash Consequences)를 豫測하고, 比較하고 그리고 評價하고자 한다. ② 企業이 行한 意思決定의 現金結果에 관한 情報는 利用者들에게의 現金流入額을 豫測하고, 比較하고, 評價하는데 有用하다, ③ 財務諸表가 事實的인 情報와 解說的인 情報를 區分해서 作成되는 경우 한층 더 有用하게 된다. 이러한 假定에서 導出된 財務諸表의 基本的인 目的은 “經濟的 意思決定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한다는 것이다. 이 基本目的에서 同 Group는 다시 7가지의 下位目的을 導出한다: ① 主로 情報를 얻을 權限, 能力 또는 資源이 制約되고 있는 利用者들과 그리고 한 企業의 經濟行爲에 관한 情報의 基本源泉이 財務諸表 뿐인 利用者들에게 奉仕하는데 있다. ② 企業의 收益力を 豫測, 比較, 評價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③ 主된 企業目標을 效果的으로 達成함에 있어 企業의 諸資源을 利用하는 經營者의 能力을 判斷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④ 企業의 收益力を 豫想, 比較, 評價하는데 有用한 諸去來와 기타 事象들에 관한 事實的이고 解說的인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⑤ 豫言的過程에 有用한 情報(利用者들의 豫言의 信賴性を 提高시킬 수 있는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⑥ 政府와 非營利組織의 財務諸表目的은 組織의 目標를 達成함에 있어 諸資源管理의 效率性を 評價하는데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데 있다. ⑦ 決定, 表現, 測定이 可能하며 그리고 社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19) 예를 들면 (1) AICPA, APB의 ARS No. 1 및 3인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과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2) A.A.A.의 ASOBAT (3) APB의 Statement No.4인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4) The Australian Accounting Research Foundation의 Study No. 3인 Objectives and Concepts of Financial Statements.

企業의 諸行爲를 報告하는데 있다.

끝으로 同 Group는 從來의 會計實務는 위와 같은 財務諸表의 目的을 達成하기에 不完全한 것이라고 指摘하면서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會計士들은 스스로를 告知者(prophets)가 아닌 主로 歷史家(historians)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財務諸表는 過去業績에 관한 報告만을 하는 것이지 未來展望에 對해서는 報告를 하지 않는 것이다. ② 會計의 諸測定은 一能的으로 交換去來結果를 基礎로 하는 것이었지 現在價値를 反映하는 것이 아니었다. ③ 會計는 흔히 代替的方法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方法을 選擇한다. 그 結果 同一한 事實을 同一하게 報告하지 못하게 되어 財務諸表의 利用者들은 競爭하는 經濟的 諸機會를 比較할 수 없게 한다. 더욱이 代替的方法의 選擇은 事實的인 經濟變動을 反映하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報告 利益額에 影響을 미치려는 意圖에서 行해지고 있다. ④ 會計는 一般目的의 財務諸表를 強調하고 있으나 각각의 利用者들은 各樣한 要求에서 相異한 種類의 財務諸表를 願하고 있다. ⑤ 現在 作成되고 있는 基本的인 財務諸表에서는 한 表의 主要金額(Key amounts)은 다른 表의 金額과 直接的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方法으로 作成되는 諸表는 매우 커다란 制約性을 갖게 되는 바 諸表가 獨立的인 것이거나 서로 聯關된 表現이 없는 表가 그 有用性을 增加시킬 것이다. ⑥ 現在의 財務諸表는 한 企業의 流動性和 現金흐름에 관한 情報를 充分히 提供하지 못하고 있다. ⑦ 貨幣單位의 購買力變動이 甚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變動이 財務諸表上에 公式的으로 認識되지 않고 있다. ⑧ 財務報告에서 오래동안 重要性이란 것이 不可缺한 基準이었지만 그 誤用을 防止하기 위해서 重要性이란 것을 적절하게 定義할 수 있고 「콤뮤니케이트」할 수 있으려는지 疑問이다.

위와 같은 現在의 會計實務에 對한 批判은 우리의 경우에도 똑 같이 適用되는 것이므로 會計基準設定時에는 이 點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위의 財務諸表利用目的에서 보아 會計擔當者가 作成하여야 할 基本的인 財務諸表에 關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企業의 경우 企業의 目標達成을 위한 諸行爲는 一定時點에서 보아 ①完了된 것, ② 來完了된 것, 그리고 ③ 豫想되는 것으로 區分된다.²⁰⁾ 完了된 것이란 첫째, 犧牲이 實現되었을 것(現金의 實際支出 또는 支出可能性이 增加하였을

20) 同報告書가 發表되기 까지의 過程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 (1) 研究委員: 會計學者, 會計實務家, 特別諮問委員, 및 「옵저버」 등 9名.
- (2) 考慮한 隣接科學: 經濟學, 財務分析, 法學, 經營學, 數學 및 社會學.
- (3) 意思의 綜合: 5,000以上の 株式會社, 會計專門會社, 組合, 公共利害集團, 全美國 및 國際分科機構, 財務關係書發刊機關 등의 意見, 企業·專門機關·政府 등의 該當 責任者들과의 50回 以上の 面接, 美國經濟의 主要部門을 代表하는 研究 및 專門集團들과의 35回의 會合, 3日間에 걸친 公聽會에서의 25企業: 機關 및 個人등의 意見.
- (4) 既刊文獻의 參照: 會計學, 經濟學, 財務分析에 關한 書物.

21) AICPA,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그 報告書에서 이 行爲를 earnings cycles이라 부르고 있다. (p.27)

것), 둘째 이와 관련된 효익이 실현되었을 것(現金의 實際收入 또는 收入可能性이 增加하였을 것), 셋째 그 以上の 관련된 相當한 努力이 不必要하게 되었을 것 등의 條件을 滿足시키는 狀態를 말한다. 未了된 것이란 첫째, 犧牲 또는 효익은 實現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효익 또는 犧牲이 아직 實現되지 않은 경우, 둘째 犧牲과 효익 모두가 實現되지 않은 경우, 셋째 努力이 行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豫想되는 것이란 첫째 計劃, 둘째 一方에서의 行爲는 取려졌으나 犧牲 또는 효익이 發生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결국 企業의 財務諸表란 이들 諸行爲에 관한 情報을 傳達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企業의 基本的인 財務諸表로서는 다음의 3가지가 要求된다고 하겠다.

(1) 財政狀態報告書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財政狀態報告書란 傳統的인 貸借對照表와 類似한 것이며 이 用語는 傳統的 會計가 갖고 있는 「貸借平均의 原理」에 의한 情報의 制約性에서 벗어나려는 意圖에서 使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報告書는 ① 未了된 行爲의 諸要素인 資產(潜在的 효익이 아직 實現되지 않은 犧牲)과 負債(諸犧牲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효익)에 관한 情報을 報告하는 것이며, ② 現在價値가 歷史의 原價와 크게 相異할 경우에는 現在價値로 報告하며, ③ 資產과 負債의 各 項目들은 未來의 實現 또는 清算될 金額과 時期에 관한 不確實性의 程度에 따라 分類하며, ④ 所有主請求權에서의 變動은 이 報告書에서든지 또는 別途의 報告書로서 報告토록 하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財政狀態一覽表인 것이다.

(2) 利益計算書(Statement of Earnings) : 利益 (Earnings)이란 企業의 所有主에게 極大額의 現金을 報償(return)한다는 企業 經營의 主目標의 成度를 表現하는 臨時的 測定價이다. 利益計算書는 바로 이러한 概念의 利益을 源泉別로 計算하는 會計의 主要報告書이다. 利益은 完了된 行爲의 結果와 未了된 行爲이지만 그 完了된 程度 만큼의 結果로 말미암아 實現된다. 또한 利益은 財政狀態 報告書에 反映시킨 諸價値에서의 變動에 依해서도 實現된다. 따라서 利益計算書에는 이 兩種利益이 모두 計上되어야 한다. 다만 前者의 利益과 後者의 利益은 그 實現의 確實性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兩者의 區分 計上이 要求될 뿐이다.

(3) 財務行爲報告書 (Statement of Financial Activities) : 이 報告書는 完了된 行爲의 結果와 未了된 行爲의 結果로 齊來된 現金의 흐름에 관한 情報(一般的인 現金流動計算表 또는 資金運用表)와 非去來의인 財務行爲 또는 豫想되는 行爲에 관한 情報을 傳達하는 報告書이다. 주로 重要的 現金收支의 結果와 現金收支를 期待할 수 있는 財務的 行爲의 事實的인 面에 관한 情報을 利用者에게 傳達함으로써 利用者 스스로 그 情報의 有意味性을 判斷토록 하는데 이 報告書의 目的이 있다.

以上에서 論者は 現代會計 理論의 「에센스」(essence)를 概觀하였다. 이것을 基礎로 하여 현재 우리의 「原則」과 「規程」의 不合理性을 分析·指摘하고자 한

다.

Ⅲ. 「原則」·「規程」의 諸不合理點

1. 「原則」改正의 必要性

本章에서 論者は「原則」을 改正하기를 무슨 理由에서 모든 會計關係者들이 바라고 있었으며, 「原則」을 改正하려는 意圖에서 出發하였던 것이 「原則」은 그대로 存續시키면서 새로이 法律로서 制定되게 된 「規程」은 어떤 問題點과 不合理點을 갖고 있는 가를 分析 考察하고자 한다.

먼저 모든 會計關係者들이 「原則」改正을 바랐던 重要한 理由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1) 經濟社會環境의 急變

會計는 經濟社會環境이 變化함에 따라 恒상 變하는 것이다. 그래서 AICPA (美國公認會計士協會) 會長이었던 Witschey氏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는 것이다:

會計는 自給式的 것 (Self-serving)이 아니다. 會計 역시 實用主義의인 것 (Utilitarian)이어야 한다. 즉 會計의 機能은 有用性的 觀點에서만 評價할 수 있는 것이다. 複雜하고 動的인 社會에 있어서 基礎的인 會計概念과 基本的인 目的들은 恒상 變動하는 狀況에 맞추어 再檢討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²²⁾

그런데 「原則」이 制定된지도 16년이 지났다. 「原則」이 制定되던 當時의 우리의 經濟社會環境을 李庸俊 教授는 다음과 같이 敘述하고 있다:

6·25動亂의 莫甚한 被害를 어느 程度 回復하고 中間安定期에 들어가 있었으나 經濟의 全般的인 水準은 보잘것이 없고... 企業規模 自體도 中小企業의 (것이였다)...(그 理由는) 6·25動亂(으로 말미암아) 民族資本이 形成되지 못한 채 外國援助에 依存하였던(데 있다). 따라서 企業經營의 形態도 個人經營 내지는 家族經營이 대부분이었고, 大企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國營企業體가 몇 개 있었을 뿐, 이나마 國家가 經營主였으므로 그 經營은 專門의 일 수 없었다.²³⁾

한 마디로 當時의 우리의 經濟社會環境은 會計自體의 重要性이 社會的으로 認識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會計原則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던 狀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2) Robert E. Witschey, Accounting Theory and the Accounting Profession." Modern Accounting Theory, edited by Morton Backe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 2.

23) 李庸俊, "우리나라 企業會計原則의 改善方向," 經營論集, 第Ⅳ卷 第1號(서울商大, 韓國經營研究所, 1972年 3月) pp. 1~2. ()內的 것은 論者가 加筆한 것일.

그러나 그로부터 10餘年이 지난 오늘의 經濟社會環境은 隔世之感이 일도록 변하였다. 企業規模와 數의 急速한 增大, 企業公開促進法에 의한 企業의 公開化, 이에 따른 利害關係者의 急增, 企業家의 社會的責任의 倍加, 公認會計士責任의 社會的認識 등은 그 變化된 代表的인 例라고 하겠다. 이제 우리도 會計는 물론 會計原則의 社會的重要性이 크게 認識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乳興期的인 經濟社會環境을 背景으로 해서 마련하였던 「原則」이 成人期에 들어선 오늘의 환경에도 맞기를 우리는 도저히 期待할 수 없다.

(2) 日本의 企業會計原則의 雛案物

「原則」은 원래 日本의 大藏省 理財局 企業會計審議會가 中間報告하였던 「企業會計原則」(昭和 29年 7月)의 體系와 內容을 雛案한 것이었다. 日本의 이 原則은 美國의 「S.H.M. 會計原則」²⁴⁾을 土臺로 하고 「A.A.A.의 會計原則」²⁵⁾ 및 日本의 會計慣習 등을 參考로 하여 制定한 것이었다.²⁶⁾

따라서 우리의 「原則」이 그 總說에서 「우리나라의 企業會計의 實務 속에서 發達된 諸原則 가운데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된 바를 要約한」 것이 라고 記述하고 있는 것은 전혀 虛構이며 그것은 1930年代의 美國과 1940年代의 日本에서 「企業會計의 實務 속에서 發達된…」 것이었을 뿐 전혀 우리의 그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또 다른 「原則」改正의 必要性을 우리는 認識하게 된다

(3) 「原則」의 論理的矛盾性과 非融通性: 「原則」이 改正되어야 한다는 가장 強力한 主張은 그 一般原則 9가지가 갖고 있는 論理的矛盾性과 「原則」의 列擧式體系에서 오는 融通性의 缺如에 基因한다. 즉 一般原則 가운데서 第1의 眞實性」 및 第4의 「確實性」의 實踐可能性, 第2의 「正規的 簿記」의 模糊性, 眞實性」과 第3의 「重要性」 및 第7의 「安全性」과의 二律背反性, 第8의 「單一性」의 不合理性 등이 「原則」이 갖고 있는 主된 缺點으로 指適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會計原則은 모든 經濟實體에 適用可能한 實踐性과 普遍性을 가져야 하며 特定한 經濟實體에만 適用可能한 會計行爲의 指示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原則」은 그 內容을 列擧式으로 規定하고 있어서 그러한 普遍性, 즉 融通性을 缺하게 되어 있다.

(4) 會計學의 變質

前章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1960年代에 들어 서면서부터 美國의 會計學界를 中心으로 활발하게 展開된 會計理論接近의 努力, 情報科學의 一分科學으로서의 會計의 變貌, 會計領域擴大의 必要性의 認識 등은 1970年代에 이르러 漸次 會計實務界에 까지 浸潤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環境은 當然히 종래의 會計原則을 그 質的인 面에서 크게 바꾸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즉 오늘의 會

24) Thomas H. Sanders, Henry R. Hatfield, and Underhill Moore, A Statement of Accounting Principles, 1938.

25) A.A.A., Committee on Revision of the Statement of Principles,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48.

計基準은 技術指向的인 것이 아닌 利用者指向的인 內容으로 規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2. 「規程」의 制定經緯와 不合理點

「規程」은 證券去來法 第126條 8에 의거해서 制定된 「上場法人 등」에만 適用되는 하나의 會計基準이다. 그런데 이 「規程」은 당초에 「原則」改正作業으로 出發하였다가 中途에서 「規程」으로 遁甲한데서 齊來된 論理的 矛盾性, 拙速的인 制定으로 말미암아 犯하게된 誤謬, 傳統的會計 및 會計基準觀을 버리지 못한데서 온 「規程」의 舊態依然性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原則」을 改惡한 結果가 되고 말은 것이다. 그래서 「規程」이 갖고 있는 諸不合理한 點을 指摘하기에 앞서 이것이 制定된 經緯를 간략하게 紹介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1) 「規程」制定의 經緯

前述한 바와 같은 「原則」改正의 必要性을 認識한 財務部는 1973年 2월에 韓國投資開發公社에 「企業會計制度審議委員會」와 「企業會計原則小委員會」²⁷⁾를 設置하고 이들로 하여금 「企業會計原則 改正案」을 作成토록 指示하였다. 「小委員會」는 「改正案」의 審議만을 하기로 하고 「改正案」作成을 韓國公認會計士協會에 依賴하는 한편 지금의 韓國會計學會의 前身이었던 「韓國會計學會세미나」에게는 改正에 대한 學界意見을 提示할 것을 要求하였다.

「協會」에서는 「企業會計原則 및 財務諸表規則案 特別研究委員會」²⁸⁾를 조직하고 同年 4월부터 7월까지 「改正案」의 草案을 作成하였다. 이 때 「特別研究委員會」에서는 「韓國會計學會세미나」가 提出한 「會計原則試案에 關한 意見書」의 用語의 一部分을 草案에 反映하였으나 그 用語의 語義가 그릇되게 해석되어 反映됨으로써 오히려 그 草案은 論理的인 缺陷을 갖게 되었다.²⁹⁾ 이 草案은 同年 8月初에 「小委員會」에 提出되었고 IESC/USAID의 W.D. Sprague라는 美國公認會計士의 諮問과 「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改正案이 8月末에 確定되고 財務部를 거쳐 法制處로 移送되었다.

法制處에서 이 「企業會計原則改正案」이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8의 規定에 의하여 法制化되었으며 同年 9월에 公聽會에서 指摘된 事項을 同年 8월에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設置된 「證券審議委員會」의 「企業會計分科委員會」³⁰⁾가 反

26) 龍家勇一郎, 近代會計學原論(稅務經理協會, 昭和 43年), p. 55.

27) 「小委員會」의 委員은 모두 財務部가 任命하였으며 다음의 9名이었음: 學界代表로 趙益淳, 李海東, 金奎三, 李庸俊, CPA로서 박우탁, 강남언, 김표진, 김형선, 投會에서 李滿基

28) 「特別研究委員會」의 委員은 다음의 8名으로서 모두 C.P.A.의 資格으로 참가한 것이며 그중 4名은 「小委員會」의 委員이기도 함: 委員長 李海東, 委員, 申廷植, 김형선, 강남언, 권개홍, 이태준, 박우탁, 윤중안.

29) 例를 들면 「企業會計原則改正案」第 2條(一般原則)의 4. 不偏性的 原則, 7. 充分性的 原則등이 그것이다.

30) 同委員會의 委員은 다음의 10名이었다: 趙益淳, 李海東, 李庸俊, 金奎三, 黃一淸, 김형선, 박우탁, 윤중안, 김표진, 이태준.

映하여「改正案」을 修正하였다. 그 뒤「改正案」에 관한 論議가 없다가 거의 一年이 지난 1974年 7月 18日에 갑작스럽게 大統領令 第7199號로「企業會計原則改正案」이「上場法人 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으로 그 名稱이 變更되어 公布되었다. 따라서 1958年度의「企業會計原則」은 그대로 存續하며 別途로 上場法人 등」에 만 適用될 또 하나의 會計基準이 탄생하게 되었다.

(2) 「規程」의 諸不合理點

위와 같은 過程을 밟아 公布된「規程」은 여러가지 點에서 會計基準으로서 不合理性을 지니고 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몇 가지 重要的 點을 指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適用範圍가 制限된 會計基準

「規程」은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8과「規程」第1條의 規定에서 보아 하나의 會計基準이지 會計規則이 아니다.³¹⁾

會計基準이란 會計行爲의 規範이며 모든 經濟實體에 適用可能한 實踐性과 普遍性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즉 會計基準은 如何한 會計主體에도 適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會計基準으로서 充分하며「上場法人 등」또는 기타 特殊한 會計主體別로 個別的인 會計基準이 存在할 性質의 것은 아니다. 다만 會計主體別로는 그 特性에 따라 會計基準을 實踐할 指針으로서 個別的인 會計規則이 있을 수 있다. 근래에 美國이나 日本의 會計界에서 推進되고 있는「會計基準의 國際化의 努力」은 한층 더 會計基準의 單一性의 要求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② 會計原則의 接近法上의 問題點

「規程」第2條 ②에「上場法人 등의 會計는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하는 會計慣習에 따라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同「規程」이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慣習”을 要約한 것임을 暗示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慣習”云云하는 것은 그「規程」을 制定하기까지의 接近方法이 歸納的인 것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歸納的 接近法은 存在하는 會計實務를 統計的 調査를 通해서 經驗的으로 觀察하고 最多數의 會計處理方法을 發見하여 會計基準化하는 것이다. 그런데「規程」은 이러한 歸納的 接近法에 따라 마련된 것이 아니고 종래의「原則」을 基礎로 하고 草案作成者들의 個人的 意見을 反映한 것에 不過한 것이므로 “一般的으로

31)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8(會計原則): ① 上場法人 기타 이 法の 適用을 받은 者의 會計士의 監査에 統一性和 客觀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第126條의 規定에 의한 證券審議委員會를 거쳐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의 原則을 大統領令으로 定할수 있다.

「規程」第1條(目的): 이 令은 證券去來法 第126條의 8의 規定에 의하여 上場法人 기타 同法의 適用을 받는 자의 會計와 公認會計士의 監査에 統一性和 客觀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公正·妥當…”云云하는 것은 不當한 表現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規程」이 歸納的接近法을 充實히 適用하였다고 하더라도 存在하는 實世界現象을 表現한 것에 不適當한 것이므로 會計基準이 實世界現象 가운데서 不合理的한 點을 改善할 수 있도록 指導할 社會機能을 가져야 한다는 點에서 보아 會計基準의 歸納的接近法 自體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美國會計學會를 中心으로 하는 會計基準의 研究는 演繹的接近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演繹的接近法은 會計의 目標를 假定하고 目標를 達成할 수 있는 最善의 會計處理方法을 論理的으로 演繹하여 이를 會計基準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接近法에 의하여 設定되는 會計基準은 實世界現象의 改善을 위한 一般的으로 認定해야 할 健全한 會計基準”으로서의 性格을 지니는 것이며 存在해야 할 實世界現象을 表現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接近法 역시 重大한 缺點을 갖고 있다. 즉 演繹法에 의하여 導出되는 會計原則은 論理的인 것은 하지만 尙 實踐可能性을 缺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美國會計學會를 中心으로 研究發表된 많은 會計基準들이 個人的 研究實績만으로 評價될 뿐 實務界에 適用되지 못하였던 것도 그러한 理由에서 였다.

따라서 論者는 會計基準이 折衷的接近法에 따라 設定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折衷的接近法에 대한 論者의 主張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詳論될 것이다.

③ 「規程」의 質의 內容과 範圍에 關한 問題

傳統的인 會計基準은 期間利益算定目的에서의 「記錄·分類·集計·要約」이라는 會計技術을 指導하는 原理이었지만 오늘날의 그것은 「情報利用者들에게 合理的判斷과 意思決定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한다는 目的에서의 「確認·測定· 커뮤니케이션」이라는 會計行爲의 規範으로 그 內容이 質的으로 變化되고 있으며 또한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즉 前者가 技術指向的인 것이었다면 後者는 利用者指向的인 것이라고 하겠다. 「規程」은 舊態依然하게 技術指向的으로만 規定하고 있어 現代的인 意味의 會計를 을 바르게 指導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오늘의 會計基準은 目的適合한 情報를 利用者에게 有意義하게 提供할 수 있는 內容을 規定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期間利益의 客觀的인 算定 만을 위한 內容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④ 「規程」의 體系上的 問題

「規程」의 體系는 「原則」의 그것과 類似하게 一般原則, 損益計算書作成原則, 貸借對照表作成原則 및 資產負債의 評價原則으로 되어 있고 그 內容이 列擧式으로 되어 있다. 會計基準이 列擧式인 것이어서는 複雜한 經濟事象과 끊임없이 變動하는 經濟事象을 統一的으로 會計處理할 수 없게 되어 會計基準이 가져야 할 包括性과 融通性을 缺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例로서 “流動資產은 무엇 무엇으로 이루어 진다”고 規定하는 것 보다는 “流動資產은 무엇이다”라는 그 定義를 明確하게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從來의 「原則」에서는 잘

은 列擧式이었으면서도 會計도 基本的 要素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定義를 規定하고 있었는데 이번의 「規定」에서는 전혀 定義의 規定이 되어 있지 않다. 이 點에서 「規程」은 改惡이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論者は 會計基準이 包括性和 融通性을 가지면서도 會計行爲의 統一性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體系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會計情報의 利用目的과 目的適合한 會計情報를 處理하는 會計行爲에 관한 規定이 있을 것, 둘째 會計의 基礎概念(會計公準)에 관한 規定이 있을 것, 셋째 會計의 基本要素(例로서 利益, 收益, 利得, 損失, 費用, 資産, 負債, 所有主請求權 등)에 대한 定義가 規定될 것, 넷째 財務諸表에 관한 規定이 있을 것, 다섯째 會計情報가 具備하여야 할 屬性을 釐명하는 一般原則에 관한 規定이 있을 것, 끝으로 여섯째 會計行爲의 施行基準에 관한 規定이 있을 것 등이다. 이들에 대한 評論이 다음 章에서 行해 질 것이다.

5 「規程」의 一般原則의 不合理性

一般原則은 會計情報가 具備하여야 할 基本的屬性을 말하는 것이다. 「規程」에서는 8가지의 一般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이들을 從來의 「原則」의 그것과 比較하면서 이와관련된 不合理性을 指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原則」에서의 「眞實性의 原則」은 實踐不可能한 지나친 推想的인 原則이라고 指摘하여 왔던 것인데 「規程」에서는 이 原則이 一見해서 除去된 것 같으나 實은 여전히 會計情報의 眞實性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規程」第2條에서 會計의 基本目的을 規定하면서 “……이에 관련된 情報를 正確히 把握하여 眞實한 報告를……” 云云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第3條의 一般原則 3에서 “……利用者에게 公正하게 提供되도록 眞實에 따라 處理하여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或者는 여기서 眞實이라 함은 常識으로 생각하는 “事實과 表現과의 一致”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合意에 의한 眞實”이니 또는 “慣習에 의한 眞實”이니 하면서 眞實性의 原則의 正當性을 主張하지 만³²⁾ 이는 言語의 遊戲일 뿐 역시 實踐性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會計情報란 그 모두가 經濟事象이라는 本體를 主로 計量化한 하나의 寫體이므로 會計에서의 眞實性의 追求는 期待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追求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規程」에서 眞實이란 用語를 모두 除去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둘째, 「原則」에서의 「正規의 簿記의 原則」은 “正規의 簿記”라는 用語意味의 模糊性和 오늘 날 簿記만이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 唯一한 手段이 아니라는 思考 등으로 一般原則으로서 不適當하다고 여겨 온 것이다. 그런데 「規程」에서는 一般原則으로 부터는 이 原則을 排除하였지만 同 第2條 會計目的을 規定하는 가운데서 “……財政上의 資料를 體系의인 正規簿記의 方法으로……”云云하면서 間接적으로 이 原則을 要求하고 있다. 이의 全的인 排除가 요구된다.

32) 黑澤清, 近代會計學, 春秋社, 1966, p. 297

趙益淳, 現代會計學, 博英社, 1963, p. 29

셋째, 「原則」의 「確實性」 및 「單一性의 原則」이 「規程」에서는 除去되고 있는데 이는 適切한 措置였다고 생각된다. 그 대신 「規程」에서는 「充分性」, 「公正性」 및 「客觀의 原則」 등을 新設하고 있다. 「規程」의 一般原則 2의 “會計處理는 客觀的인 資料와 證據에 의거하여야 한다”라고 規定한 것이 客觀性의 原則인데 이 原則은 不偏性(Freedom from bias)의 原則과 더불어 信賴性(Reliability)의 原則의 下位의 原則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上位原則인 信賴性의 原則을 一般原則으로 規定함으로써 客觀性 및 不偏性의 原則을 同時에 要求토록 했음이 合理的이었을 것이다. 「規程」의 一般原則 3의 “財務 諸表에 表示될” 資料와 情報은 利用者에게 公正하게 提供되도록 眞實에 따라 處理하여야 한다는 것이 「公正性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公正性이란 一般原則이기 보다는 Leonard Spacek의 主張과 같이 會計理論을 倫理的接近法(the ethical approach)에 따라 接近할 때의 하나의 會計公準(基礎概念)인 것이다.³³⁾

그렇지 않고 正公性을 一般原則으로 列舉할 때는 그것이 갖는 主觀的인 概念 때문에 實踐性이 문제되는 것이다. 「規程」의 一般原則 6의 “重要한 會計政策과 會計處理基準, 科目 및 金額에 관하여 適切한 內容을 財務諸表上에 充分히 表示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前述한 「韓國會計學세미나」에서 提出하였던 「意見書」에서의 原則의 하나이었던 이른바 「充分性의 原則」(sufficiency)을 反映하고자 한 것인 듯 하다. 원래 充分性의 原則이란 “情報利用者の 利用目的을 달성하기에 充分한 質과 量의 情報를 提供하여야 한다.”³⁴⁾는 것으로서 公開性(disclosure)의 原則을 그 下位原則의 하나로 갖는 것이다. 「規程」의 그것은 이 下位原則인 公開性의 原則의 內容만을 規定하고 있는데 그 內容을 補完할 必要가 있다.

넷째, 「規程」도 「原則」의 경우와 同一하게 一般原則으로 「明瞭性」, 「重要性」 「繼續性」 「安全性」 및 「剩餘金區分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다. 이 가운데 安全性의 原則은 主로 歷史的 事實을 事後的으로 處理하는 財務會計에서는 그 實質的 效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繼續性의 原則과도 二得背反性을 갖는 것이므로 오래 전부터 그 不當性이 指摘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明瞭性의 原則과 繼續性의 原則은 理解可能性(Understandability)의 原則의 하나의 下位概念이므로 一般原則으로는 이 理解可能性의 原則을 規定함으로써 그 下位概念들인 計量可能性, 利用者概念과의 首尾一貫性, 比較可能性(繼續性과 統一性), 그리고 明瞭性의 原則 등을 모두 要求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剩餘金區分의 原則은 會計情報의 屬性을 規定하는 一般原則으로서의 性格이라기 보다는 會計行爲의 施行基準으로서의 性格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一般原則의 하나로 規定하는 것은 不合理的하다고 생각된다.

33) “Comments of Leonard Spacek,” in Robert T. Sprouse and Maurice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New York: AICPA, 1962) p.57.

다섯째, 會計를 利用者指向的으로 接近하는 경우 基本的인 一般原則은 目的適合性의 原則인 것이다. 이 目的適合性은 다른 어떤 屬性 보다도 會計情報가 반드시 具備하여야 할 屬性인 것이다. 즉 비록 會計情報가 다른 屬性은 다소 缺한다고 할지라도 이 目的適合性 만은 具備하여야 한다. 「規程」에서 이를 一般原則의 하나로 規定하지 않고 있음은 不當하다고 생각된다.

⑥ 「規程」의 財務諸表에 관련된 問題

財務諸表는 會計의 最終產物이며 會計情報를 利用者들에게 傳達해 주는 媒體인 것이다. 「規程」은 財務諸表로서 損益計算書,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貸借對照表와 附屬明細書를 要求하고 있으며, 특히 附屬明細書 가운데서 未處分利益剩餘金明細書, 製造原價明細書, 資金運用表와 聯結財務諸表를 반드시 添附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論者は 基本的인 財務諸表로서 利益計算書와 財政狀態報告書 그리고 財務行爲報告書가 필요하다고 前章에서 言及한 바 있다.

또한 「規程」은 資産의 評價는 取得原價로(23 ①), 條負債의 評價는 「企業이 負擔하는 債務額」으로(31條)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負債의 評價는 「企業이 負擔하는 債務額」으로 한다는 表現은 그것이 債務의 貸借對照表作成日 現在의 現價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債務辨濟日 現在의 價格總計(取得原價)를 뜻하는 것인지 不明瞭한 것이나 「規程」全體에 흐르고 있는 思考에서 보아 後者, 즉 債務額 역시 取得原價로 評價함을 原則으로 한다고 解釋해야 할 것이다. 그런 때 論者は 資産이든 負債이든 取得原價만으로 評價된 情報가 不特定多數人들의 財務諸表利用目的에 언제나 有用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點에 대해서 ASOBAT는 다음과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즉 既存會計實務가 받고 있는 「基本的인 批判은 未來의 收益性, 支給能力 또는 綜合的인 經營能率을 豫測하는 基準으로 歷史的 原價가 갖는 缺陷 때문이다. 우리들은 歷史的 原價가 合目的的인 것이지만 그러나 如何한 目的에나 妥當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따라서 歷史的 原價情報는 물론 現在의 原價情報(current cost information)를 建議하는 바이다.³⁵⁾

따라서 財務諸表는 取得原價와 함께 現在의 原價를 同時에 報告하는 多位式 報告書(multi-column statements)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會計의 大部分의 情報는 不確實한 것이므로 그 正確성과 信賴性의 範圍를 告知함으로써 그 情報를 利用者가 主觀的으로 判斷하여 利用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會計情報를 單一數值로 報告하는 것 보다는 範圍(例를 들면 建物 500萬원~600萬원式)로, 또는 單一數值와 아울러 標準偏差를 附記하여 報告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措置는 모두 前述한 充分性의 原

34) Howard J. Snavely, "Accounting Information Criteria,"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0), p.230.

35)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Illinois: A.A.A.,1966), p. 19.

則을 實踐하려는 하나의 方便이라고 하겠다.

⑦ 「規程」의 기타 諸不合理點

앞에서 指摘한 「規程」이 갖고 있는 問題點들 以外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不合理點이 指摘될 것이다.

첫째, 外貨負債調整計定の 償却: 「規程」은 第32條에서 「外貨評價損失은 外貨負債調整計定을 設定하여 當該 外貨負債를 償還할 때 마다 그 償還金額에 該當는 金額을 償却하는 方法으로 處理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法人稅法施行令 第38條의 2의 「外換債務에 대한 評價損益」의 思考를 그대로 會計基準에 反映시킨 것이다. 이 規定은 費用收益 期間的 對應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며 現在와 未來 株主들의 利害關係를 調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外換債務의 評價損益은 外換債務期日에 均等하게 配分되도록 償却토록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統合規定할 事項: 「規程」은 同一한 內容을 別個의 條項으로 重複해서 規定하고 있는데 이들을 한 條項으로 統合해서 規定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면 다음의 條項들이다:

第7條 2와 第8條 ②(收益의 實現), 第7條 5와 第8條 ①·第9條 ①·第10條 ① 그리고 第11條 ①(損益計算書의 區分), 第13條 1과 第14條 ① 第15條 前文(貸借對照表의 項目區分), 第13條와 第17條 第20條·第21條·第22條(貸借對照表作成 原則).

셋째, 規則에 一任될 事項: 「規程」은 會計原則의 下位概念인 會計規則에 一任하여야 할 事項을 包含하고 있어 原則이 지나야할 包括性을 制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事項이다.

第4條 ④(財務諸表의 樣式), 第8條 ③④(試用販賣 및 豫約販賣의 收益實現時點), 第9條 ②③(販賣費 및 一般管理費) 第10條 ②③(營業外收益 및 營業外費用), 第11條 ②③④⑤(特別利益, 特別損失, 法人稅控除前 純損益, 當期純損益), 第14條 ②③④(流動資產), 第15條 1, 2, 3, 4, (固定資產例示), 第16條(移延資產의 例示), 第18條(流動負債), 第19條(固定負債).

넷째, 損益區分의 不合理性: 「規程」은 第7條 ⑤에서 損益計算書는 賣出總損益營, 營業損益, 經常損益 및 當期純損益으로 區分表示하도록 하고 있다. 損益計算書는 經濟實體의 期間成果를 報告할 뿐만 아니라 利害關係者에의 所得分配計算機能도 갖는 것이므로 그 損益을 다음과 같이 區分表示하는 것이 보다 合理的일 것이다: 附加價值, 企業利益, 投資者利益, 株主利益 및 普通株主利益

다섯째, 割賦賣出의 收益實現時點: 「規程」은 第8條 ②의 2에서 「割賦賣出額은 割賦金 回收約定日에 實現되는 것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回收約定日基準인 하나의 權利義務確定主義를 擇함을 뜻하는 것이다. 원래 韓國公認會計上協會의 「特別研究委員會」가 「小委員會」에 提出한 「改正案」

草案에는 割賦販賣의 收益認識基準은 從來의 回收基準(現金主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으나 「小委員會」에서의 審議過程에서 Sprague氏의 販賣基準(發生主義)의 主張³⁶⁾을 고려해서 回收約定日基準(權利義務確定主義)으로 이를 修正하였던 것이다.

近代會計의 費用·收益認識基準은 原則적으로 發生主義이며, 이 發生主義는 現金主義에서 權利義務確定主義를 거쳐서 出現된 것이고, 우리의 現實은 割賦販賣制度가 아직은 賦金回收를 保障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것이 못되므로 美國과 같은 販賣基準을 받아 드리기에는 時機尙早라는 생각에서 現金主義에서 發生主義로 移讓되는 過渡期的인 措置로서 回收約定日基準을 「少委員會」가 擇한 듯 하다. 그러나 割賦販賣의 경우 回收約定日基準은 約定日이 經過되었으나 回收되지 않은 收益(貸損의 危險이 現實화된 것)을 期間收益으로 計上한다는 矛盾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規定은 다음과 같이 修正된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 「割賦賣出額은 賦金回收일에 實現되는 것으로 한다. 但, 當該 割賦金回收에 適切한 保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割賦賣出額은 販賣일에 實現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會計原則의 法制化 問題

當初 「規程」(案)에 대한 公聽會席上에서도 會計基準이 法制化되어야 할 性質의 것이냐에 관해서 論議가 있었다. 法制化를 反對하는 사람(主로 會計學界)의 論據는 會計基準을 法制化한다는 것은 會計學이라는 하나의 學問을 法條文化하는 것과 같으며 또한 會計學은 產業社會의 構造 및 質的인 面에서의 變革에 따라 變化될 性質의 것인데 이를 法制化한다면 그 可變性이 制約될 것이라는데 있다. 論者도 原則적으로는 法制化의 反對論者의 立場에 있다. 그러나 稅法이 企業會計의 內部까지 浸透되어 있는 우리의 現在의 企業會計風土에서 稅法을 추출하고 會計基準을 企業會計의 指導原理로서 받아드리게 하는데 貢獻할 수 있으리라는 理由에서 暫定的인 措置로서 會計基準을 法制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會計基準의 法制化에 따른 基準의 非彈力性을 完化하기 위해서 財務部 또는 韓國公認會計士協會內에 常設機關으로 「財務會計基準審議委員會」를 設置하고 이 機構로 하여금 會計法院으로서의 權限과 會計基準의 設定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法的措置를 取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規程」은 存在할 性質의 것이 못되며 그 內容

36) Sprague氏는 「小委員會」에 提出한 그의 memorandum에서 다음과 같이 APB Opinion No. 10을 例로들면서 販賣基準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賦金을 回收할 때까지 割賦販賣上의 利益을 移延하도록 草案이 要求하고 있는 것은 美國에서의 會計原則과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APB #10) 例示된 非正常的의 狀況以外的 경우에서는 報告利益의 installment method는 認定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稅法이 installment method를 許容한다는 事實(美國에서는 그러하다)이 財務報告原則을 支配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數多한 不合理性을 지니는 것이고, 그리고 「原則」역시 여러가지 點에서 改正되어야 할 狀況에 있는 것이다. 論者は 그래서 「原則」과 「規程」그 모두를 廢棄하고 如何한 經濟實體에나 適用될 수 있는 새로운 단 하나의 財務會計 基準을 設定하기를 主張하는 것이다. 章을 달리하여 새로 設定할 財務會計 基準에 關한 論者의 見解를 提示하고자 한다.

IV. 財務會計基準의 性格·設定方法 및 體系

1. 基準의 性格

財務會計基準의 性格은 그 基準을 어떤 接近法에 따라서 設定하게 되느냐에 의하여 相異해 질 것이지만 論者는 基準은 다음과 같은 性格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⁷⁾

첫째, 基準은 會計擔當者가 會計行爲——確認, 測定, 「컴퓨터라이징」——를 수행할 때 遵守하여야 할 規範이다.

둘째, 모든 經濟實體에 適用 가능한 實踐性과 普遍性 그리고 融通性을 가진다. 따라서 特定한 經濟實體에만 適用 가능한 會計行爲의 細部的인 指示는 會計基準이 아니라 그 下位概念인 會計規則인 것이다.

셋째, 始絡一貫된 論理的 體系는 多少缺할 수 있지만 基準 相互間의 論理的 矛盾性과 排反性을 갖지는 않는다.

끝으로 넷째, 產業社會構造가 變革되고 會計情報에 대한 要求가 變化됨에 따라 變하게 되는 可變性을 갖는다.

2. 基準의 設定方法

會計基準은 하나의 會計 「모델」이다. 一般的으로 이제까지의 會計 「모델」은 實世界現象에 存在하는 또는 存在하여야 할 것을 表現하고자 하는 것들이었다. 前者의 「모델」을 記述的 「모델」(descriptive models)이라고 하며, 後者の 「모델」을 規範的 「모델」(normative models)이라고 한다. 이들 각각의 「모델」은 相異한 接近法에 따라서 만들어 진다. 즉 記述的 「모델」은 歸納的接近法(inductive approach)에 의해서 그리고 規範的 「모델」은 演繹的接近法(deductive approach)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Ijiri는 이들 「모델」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記述的 「모델」은 일련의 經驗的 觀察(a set of empirical observations)로부터 導出된 하나의 歸納的 「모델」이며, 反面의 規範的 「모델」은 일련의 目標假定(a set of goal assumptions)으로부터 導出된 演繹的 「모델」이다.

그래서 記述的 「모델」은 經驗的現象을 基礎로 하고 있는 反面의 規範的 「모델」은 目標指向性을 強調하는 것이다. ……記述的 「모델」의 基本目的은 그 本質을 喪失하지 않고 簡單한 「모델」에 의하여 복잡한 經濟的 現象를 表現하고자 하는 데 있다…… 經驗的 現象을 正確하게 表現하는 것이라면 그것은豫

言力(*predictive power*)을 가질 것이다……이 豫言性(*predictability*)이 記述的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効益中的 하나이다……規範的 「모델」을 만드는 過程은 (1) 目標假定과 (2) 演繹이라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이 「모델」은 目標指向的인 것이기 때문에 그 假定한 目標를 明白하게 表現하야 한다…… 그 다음 「모델」이 지나야 할 屬性이 그 目標로부터 演繹된다.³⁸⁾

따라서 記述的 「모델」을 開發하는데 利用되게 되는 研究方法論은 ① 經驗的 觀察과 ② 歸納的인 것이다. 經驗的 現象을 觀察하는 直接的인 方法은 質問書式實驗, 面接 또는 研究家の 實際 經驗등이며 間接的인 方法은 文獻을 調査하는 것이고 또한 觀察은 統計的인 것일 수도 있고 判斷的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觀察 뒤에 實世界現象의 一般性(*generality*)을 歸納化하여 「모델」化한다. 이러한 過程을 거쳐 「모델」化된 會計基準을 우리들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이라고 하며 그것은 存在하는 實世界現象을 表現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歸納法에 의하여 導出된 記述的會計基準은 通常的으로 既存하는 會計學現象 모두를 表現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既存實務가 最善의 것일 때만 會計基準으로서의 妥當性を 認定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Caplan*은 記述的 「모델」을 다음과 같이 反對하면서 規範的 「모델」을 主張하는 것이다 :

認定할 수 있는 會計實務의 現範圍가 매우 廣範하고 또한 相互間에 矛盾性を 지니고 있기 때문에 會計의 論理的이고 相互矛盾性이 없는 記述論的 「모델」을 開發하고자 하는 試圖는 결코 建設的인 것이 못된다. 그래서 어떤 合理的인 「모델」이든지 그것이 實世界를 記述하는 諸要素를 반드시 內包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會計에서 純粹한 記述的 「모델」의 概念을 애당초 拒否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規範論은 既存 또는 새로운 會計實務를 評價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追加的인 研究를 必要로 하는 分野에 注意를 傾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것은 우리들(會計人)이 行하는(會計處理하는)바를 그리고 우리들이 왜 그것을 行하는가를 非會計界(*the nonaccounting world*)에게 說明하기 위한 合理的인 基準을 會計士들에게 提供한다.³⁹⁾ 演繹的接近法에 의한 規範的會計基準은 現象을 改善하는데 도움이 될 「一般的으로 認定해야할 健全한 會計原則」이 되는 것이며 또한 存在해야할 實世界現象을 表現하는 것이다. 그러나 A.A.A.를 中心으로 많은 會計學者들에 의하여 이제까지 研究되어 온 規範的會計基準은 그것의 論理를 뒷받침할 만한 證

37) 基準의 性格 가운데 앞의 세가지 性格은 韓國會計學「세미나」의 「會計原則 試案에 관한 意見書, 1973」(pp. 2-3)에서도 指摘되고 있는 것임.

38) Yuji Ijiri, "The Nature of Accounting Research," *Research Methodology*, edited by R.R. Sterling (Lawrence, Kansas: Scholars Book Co., 1972), pp. 61-63.

39) Edwin H. Caplan, "Accounting Research as an Information Source for Theory Construction," edited by R. R. Sterling, op. cit., p.46.

據를 提示하지 않는 것이어서 하나의 獨斷的인 것(dogma)에 不適當이었지 會計實務에 反映되지는 못하였다. 이 點에 대하여 Caplan은 다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

信賴感으로 말미암아 認定하지 않으면 안되는 權威者의 意見表明(*statements of authoritarian opinion*)을 *dogma*라고 한다…… 獨斷的接近法(*dogmatic approach*)은 不確實한 狀況에서 그 不確實性을 減少케 한다. 專門分野에 있어서 *dogma*는 尊敬을 받고 있는 *leaders*로 하여금 實務에 영향을 주게 하며 그로말미암아 그것은 하나의 統合力(*a unifying force*)과 集合力(*Cohesive force*)을 行使하게 된다. *dogma*는 그 專門分野의 構成員, 즉 大衆들이 그 *leaders*의 意見을 즐겨 認定하고 그것을 따르려 할 경우만 有效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世界를 研究하면 할수록 이들 意見을 表明한 源泉을 아무리 尊重한다고 할지라도 檢證할 수 없는 意見의 表明은 점점 더 認定할 수 없을 것이다.⁴⁰⁾

따라서 演繹的接近法에 依해 導出된 會計基準은 意見을 事實과 代置하고 主張(assertions)을 假定檢證(hypothesis-testing)으로 代置토록하는 經驗的研究(empirical research)를 다시 거쳐서 設定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의 會計基準으로서 會計實務界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會計基準은 결국 歸納的接近法 이라든가 또는 演繹的接近法 이라든가 어느 하나의 接近法만으로서서는 完全한 것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의 設定은 여러가지 接近法이 併用되는 折衷的接近法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最近에 會計理論의 接近도 折衷的接近法에 의하여 展開하는 傾向이 일고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⁴¹⁾ 論者가 主張하는 折衷的接近法이란 歸納的接近法, 演繹的接近法, 實用主義的思考, 그리고 經驗的檢證(empirical research) 등의 綜合的利用을 말한다 즉 會計는 情報利用者의 要求에 副應하여야 한다는 實用主義的인 思考를 바탕으로 하고 歸納的 接近法에 의하여 問題를 確認하고, 聯關性있는 資料를 蒐集하고, 다시 演繹的 接近法에 의하여 이들 資料로부터 諸假定을 定立하고 會計基準을 導出한다. 導出된 諸基準은 다시 經驗的 檢證을 통해서 會計基準

40) Ibid., p.47.

41) 會計理論의 折衷的接近法을 主張하는 學者들의 例 :

①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Rev. ed.,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70), p. 16.

② Raymond J. Chambers, *Accounting, Evaluation and Economic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p.28-31.

Robert R. Sterling, *Research Methodology in Accounting* (Lawrence, Kansas: Scholars Book Co., 1972), p.3.

④ Lawrence L. Vance, "The Road to Reform of Accounting Principles," the *Accounting Review*(October 1969), pp.702-703.

⑤ Thomas R. Prince, *Extension of the Boundaries of Accounting Theory* (Cincinnati: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63), pp. 18-21.

으로 確定된다. 陳腐한 表現일지는 모르겠으나 會計基準의 設定에도 “토끼와 거북이의 寓話”가 適用된다고 하겠다. 折衷의 接近法은 長期的인 時間을 要하는 것이지만 그 結果는 完全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會計基準의 體系

會計基準이 어떤 體系를 갖추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學者間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論者의 會計基準體系에 관한 見解를 提示하기에 앞서서 最近 美國에서 發表된 代表的인 會計基準들의 體系를 概觀하고자 한다.

(1) ARS No.3 (1962)⁴²⁾

이것은 ARS No. 1(1961)⁴³⁾의 會計基礎公準을 基礎로하여 論理的으로 會計基準을 導出した 것으로 會計要素들에 관한 定義의 規定과 會計行爲의 原則으로 區分되어 있다.

- ① 定義：財務諸表, 資產, 原價, 減價計算, 一定期間의 減價費, 負債, 所有主請求權, 投下資本, 純利益, 配分.
- ② 原則：(A) 期間利益의 算定, (B) 原因別 資源變動의 分類, (C) 資產의 告知, (D) 資產價額의 決定, (E) 負債의 告知：現金決裁를 要하는 負債의 現價告知, (F) 現金以外的 財貨나 用役으로 決裁를 要하는 負債의 合議된 販賣 價格으로의 告知, (G) 資本과 留保利益의 區分, (H) 損益計算書에 區分表示.

(2) Paul Grady의 Inventory (1965)⁴⁴⁾

이것은 現會計實務中에서 最善의 것을 確認抽出하여 體系化한 것으로서 다음의 5가지 目的(對象)別로 規定된 것이다：

- ① 期間利益算定 ② 資本에 관한 經理 ③ 資產에 관한 經理 ④ 負債에 관한 經理 ⑤ 財務諸表

(3) A.A.A.의 ASOBAT (1966)⁴⁵⁾

ASOBAT는 會計基準을 ① 會計情報의 基準(standards for accounting information)과 ② 會計情報傳運의 指針(guidelines for communicating accounting information)으로 區分하여 각각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① 會計情報의 基準：(i) 目的適合性(relevance) (ii)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iii) 不偏性(freedom from bias) (vi) 計測性(quantifiability)

42) Robert T. Sprouse and Maurice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3 (AICPA,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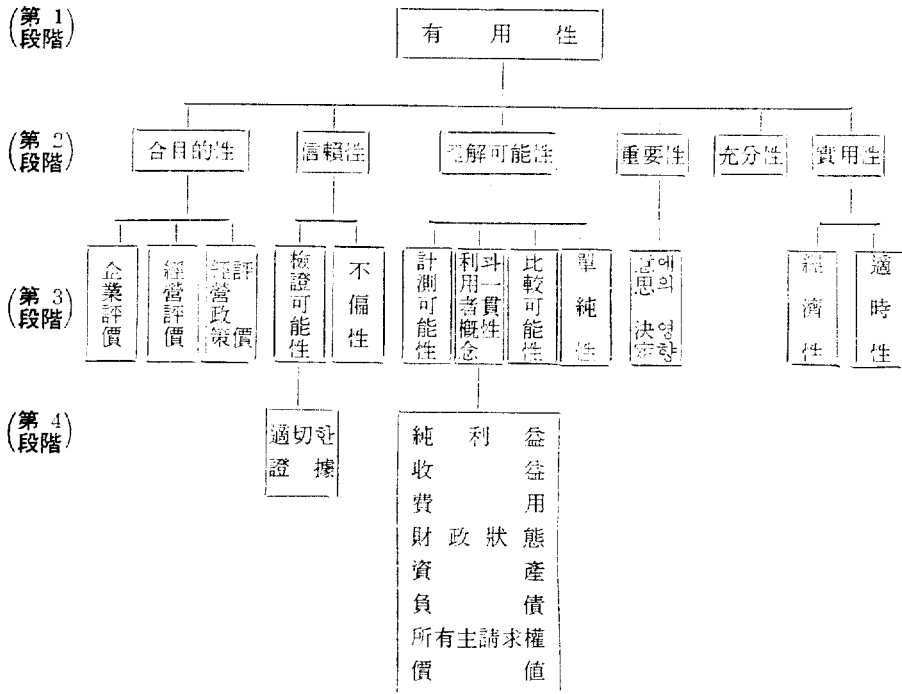
43) Maurice Moonitz, The Basic Postulate Accounting, Accounting Research Study No.1 (AICPA, 1961)

44) Paul Grady, Inventor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7 (AICPA, 1965)

② 會計情報의 傳達指針：(i) 豫想되는 用途에의 適合性， (ii) 有意味한 關係의 告知， (iii) 環境的 情報의 附記， (vi) 實體內 및 實體間의 實務의 統一性， (v) 實務의 繼續性.

(4) Snavely의 會計情報規準(criteria)⁴⁶⁾

Snavely는 ABOBAT의 4개의 會計情報基準만으로는 不充分하다고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階層的으로 會計情報規準을 作業化하고 있다：



(5) APB Statement No.4 (1970)⁴⁷⁾

이것은 從來의 다른 어떤 會計基準보다도 內容을 擴大規定하고 있다.

- ① 財務諸表：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所有主請求權變動表，기타諸表
- ② 財務會計의 環境：利用者，經濟行爲
- ③ 財務會計 및 財務諸表의 目的
- ④ 基本的 特徵：會計實體，繼續企業，經濟的 資源과 債務의 測定，期間，貨幣的 測定，發生，交換價格，概算，判斷，財務情報의 一般目的，基本的

45)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Ibid., (A.A.A., 1966).

46) Howard J. Snavely, "Accounting Information Criteria," the Accounting Review (April 1967), pp. 223-332.

47) AICPA The Accounting Principles Board Basic Concepts and Accounting Principles Underlying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APB Statement No. 4 (AICPA, 1970).

으로 관련된 財務諸表, 形式에 優先하는 本質, 重要性

⑤ 基本的 要素: 資產, 負債, 所有主請求權, 收益, 費用, 純利益

⑥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

(i) 財務會計 全般과 他原則의 基礎가 되는 一般原則:

一般測定原則: 原始記入原則, 利益決定原則

修正慣習: 保守主義, 利益의 強調

(ii) 財務會計過程上的 記錄, 測定, 意思傳達의 指導原理가 되는 廣範한

運用原則: 選定 및 測實에 관한 原則, 財務諸表作成에 관한 原則

(iii) 細部原則: APB意見書와 會計研究報告書의 說明에 委任

위와 같이 諸學者 또는 專門機關이 表明하고 있는 會計基準의 體系는 各樣 各色이다. 이것은 普遍妥當性을 認定받는 會計理論이 아직 定立되지 못한데서 齊來된 現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論者가 表明하고자 하는 體系 역시 누구에게나 그 妥當性을 認定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 않는다. 그것은 諸學者나 專門機關이 主張하고 있는 것을 考慮하고 여기에 論者의 主規的 判斷을 加味한 것에 不過한 것이다. 會計理論이 定立되지 않은——어떤 意味에서는 永遠히 그 理論을 定立할 수 없는 것이 會計의 屬性이라고도 할 수 있다——狀況에서 누구에게나 共鳴하는 會計基準體系를 期待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것이다.

論者は 다음과 같은 會計基準體系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1) 會計情報의 利用目的 및 會計行爲에 관한 規定: 「어떤 研究分野에 있어서나 그 出發點은 研究領域(boundaries)을 確定하고 그 目的(Objectives)을 決定하는 일」⁴⁸⁾이기 때문에 會計基準體系에 있어서도 그것의 목적과 會計行爲(領域)에 대한 確定이 무엇 보다 먼저 要求된다. 이들에 관한 論者의 見解는 II章에서 記述된 바이다.

(2) 基礎概念(會計公準)에 관한 規定: 會計의 基礎概念(basic concepts)은 會計公準(accounting postulates)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會計가 運用되어야 할 經濟的, 政治的 및 社會的環境에 관한 基本假定 또는 基礎的命題인 것이다. Hendriksen은 會計公準의 基本規準(the basic criteria)으로서 두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會計論理의 展開와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즉 그 위의 命題(基準)들을 論理的으로 導出하는 하나의 基盤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會計公準決定을 위한 討議에 參加한 사람들로부터 그 妥當性을 認定받는 것이어야 한다.⁴⁹⁾

或者是 會計目的 自體가 하나의 會計公準이 된다고 主張할지 모르겠으나 目的의 그것은 公準에 先行하는 일련의 命題라고 보는 것이 論者의 見解이다. 왜냐하면 會計公準은 그것이 會計의 基本目的을 達成하는데 關聯性을 갖는지의

48) Eldon S. Hendriksen, op. cit., p.102.

49) Ibid., pp.96—97.

與否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會計의 諸基準은 이들 會計公準으로 부터 論理的으로 導出하게 된다.

會計公準에 關한 學者間의 見解도 一致되지 않고 있다. 그 代表的인 見解를 먼저 紹介하고 끝으로 論者의 見解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Spaeck⁵⁰⁾ : ① 公正性

*Study Group on Business Income⁵¹⁾ : ① 貨幣單位의 安定, ② 永續性, ③ 實習

*Paton 및 Littleton⁵²⁾ : ① 企業主體, ② 繼續企業, ③ 價格總計, ④ 原價附着, ⑤ 費用·收益의 期間對應, ⑥ 檢證可能한 客觀的證據

*Scott⁵³⁾ : ① 正義, ② 眞實, ③ 公正性

*Grady⁵⁴⁾ : ① 私有財產權, ② 實體, ③ 繼續企業, ④ 貨幣的 表現, ⑤ 首尾一貫性, ⑥ 多樣性, ⑦ 保守主義, ⑧ 信賴性, ⑨ 重要性, ⑩ 適時性.

*Moonitz⁵⁵⁾ : 環境의 公準 : ① 計量化, ② 交換, ③ 實體, ④ 期間, ⑤ 測定單位

附隨의 公準 : ① 財務諸表, ② 市場價格, ③ 實體, ④ 暫定性

當爲의 公準 : ① 繼續性, ② 客觀性, ③ 統一性, ④ 貨幣單位의 安定性, ⑤ 公開性

*Mattessich⁵⁶⁾ : ① 貨幣價值, ② 期間, ③ 構造, ④ 兩面性, ⑤ 集約, ⑥ 經濟對象, ⑦ 貨幣請求權의 不平等, ⑧ 經濟主體, ⑨ 實體, ⑩ 經濟去來, ⑪ 評價, ⑫ 實現, ⑬ 分類, ⑭ 資料投入, ⑮ 持續性, ⑯ 外延, ⑰ 重要性, ⑱ 配分

*Kircher⁵⁷⁾ : ① 經濟環境(私有財產, 交換, 市場價格), ② 特定實體(企業實體, 繼續企業), ③ 「콤뮤니케이션」(貨幣的 表現, 首尾一貫性, 計量化, 安定한 單位), ④ 思考의 合計의 方式(重要性, 適時性, 期間), ⑤ 節次의 論理的「세트」(多樣性, 信賴性, 內部統制), ⑥ 觀察者(保守主義), ⑦ 利用者(意思決定者: 財務的 公開)

*Chambers⁵⁸⁾ : ① 個人的 思考 및 行爲(恒常的 「시스템」으로서의 人間, 自

50) Leonard Spaeck in The Basic Postulates of Accounting ARS No.1, AICPA, 1961. pp.56-57.

51) Study Group on Business Income, AICPA, Changing Concepts of Business Income (New York: Macmillan Co., 1952).

52) W.A. Paton and A.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A.A., 1941).

53) DR Scott, "The Basic for Accounting Principles," the Accounting Review (December 1962).

54) Paul Grady, op. cit.

55) Maurice Moonitz, op. cit.

56) Richard Mattessich, Accounting and Analytical Methods (Homewood, Illinois: Richard D'Irwin, Inc., 1964).

57) Paul Kircher, "Coding Accounting Principle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1963) pp. 742-752.

58) Raymond J. Chambers, op.cit.

覺 및 觀察, 知覺, 學習, 習慣, 믿음, 推論, 假定, 理論, 檢證), ② 目的 및 手段(目的과 選好, 評價, 合理性, 手段, 諸手段의 利用, 期待 및 成就, 所得, 生産, 消費 및 貯蓄), ③ 行動의 環境(法的構造, 專門化 및 交換, 市場 및 價格, 貨幣, 信用), ④ 貨幣的 計算(實體의 貨幣的 計算의 必要性, 回顧的·現在的·豫想的計算, 分類 및 測定, 秩序 및 加算性, 測定될 資産, 計算單位 및 測定, 會計領域), ⑤ 財政狀態(資産, 請求權, 財政狀態報告書, 資本維持, 利益, 原價, 利得, 損失), ⑥ 情報 및 情報處理(記號, 處理者의 獨立性, 目的適合性, 中立性, 「엔트로피」의 法則, 「휘드백」, 信賴性)

⑦ 合計의 公式機構(貨幣的記錄, 同型性, 現金 및 發生, 暫定的整理, 主觀的 整理, 組織的 記錄을 위한 諸法則)

⑧ 「컴뮤니케이션」(信號傳達, 能率性, 重複)

⑨ 商企業(適應的 實體, 構成員, 構成要素, 報酬率, 諸比率, 貨幣的 項目, 非貨幣的 項目, 株式費用, 繼續企業, 減價費, 經濟的 陳腐化, 營業權)

⑩ 商企業會計(資本維持)

⑪ 株式會社(無限壽命, 有期限的 負債)

⑫ 組織內에서의 財務的 「컴뮤니케이션」(恒常的 「시스템」, 任務分擔, 部門, 調整, 物理的 尺度로의 測定, 營業活動의 直接原價)

⑬ 役務 및 政府組織(公益事業, 私的 役務組織資金, 公的 役務組織)

論者는 다음의 7가지 公準을 提案하고자 한다. 이들은 會計情報利用者의 屬性, 會計의 主體, 主體의 屬性, 會計處理의 對象, 會計의 手段 및 會計處理의 時期에 관한 假定들이다.

① 恒常的 「시스템」(Homeostatic systems) : 會計情報의 利用者인 人間은 苦痛을 해소하고 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不斷한 意思決定과 判斷을 하는 恒常的 「시스템」⁵⁹⁾이다.

② 實體(Entites) : 會計의 主體는 實體이며 特히 經濟實體이다.

③ 繼續性(Continuity) : 會計主體인 實體는 有限的인 것이 아니라 永遠히 繼續하는 것이다.

④ 經濟事象(Economic events) : 會計處理의 對象은 經濟事象들이다.

⑤ 計量化(Quantification) : 會計情報化의 手段은 計量的 表示로서, 여기서 말하는 計量化란 반드시 貨幣的 表現만을 가리키지는 아니 한다.

⑥ 發生(Accrual) : 原則的으로 會計處理의 時期는 經濟事象의 發生時點이다

⑦ 實現(Realization) : 收益에 관한 情報의 認識時點은 그것이 實現된 時點이다.

(3) 基本要素에 대한 定義 : 會計基準體系에서 세번째 規定될 事項은 會計의 基本要素에 대한 明確한 表明이다. 論者는 이들 基本要素로서 적어도 다음의

59) 恒常的 「시스템」이란 生物學的인 用語로서 生物의 身體內部的 體溫과 化學的인 性分 따위가 恒常保存되도록 調節하는 「시스템」을 말함.

8가지가 定義되어야 한다고 본다.

① 利益(net profit, earnings, income) : 追加投資로 말미암아 投下資本의 變動이 없었으며 또한 所有主에의 分配가 없었다는 假定下에서의 所有主請求權의 一會計期間에서의 增加.

② 收益(revenue) : 一定期間에 顧客에게 提供된 財貨와 後務總計의 貨幣的 表現.⁶⁰⁾

③ 利得(gains) : 正常的 營業活動과 관련되지 않은 去來나 事件에서 發生하는 純有利한 結果(net favorable results).⁶¹⁾

④ 損失(loss) : 利益또는 利得의 反對의 意味

⑤ 費用(expenses) : 一定期間과 直接 또는 間接의 關聯된 市場에 로의 財貨와 後務의 흐름 및 關聯된 營業活動에서의 消滅된 原價.⁶²⁾

⑥ 資產(Assets) : 用役潛在力(service potentials)⁶³⁾

⑦ 負債(liabilities) : 過去나 當期去來로 말미암아 發生되고 未來에 決裁를 要하는 債務 및 資產의 引渡나 用役을 提供할 義務⁶⁴⁾

⑧ 所有主請求權(ownership equities) : 資產總計에서 負債總計를 差減한 殘額 ($\Sigma A - \Sigma L = P$)⁶⁵⁾

(4) 財務諸表에 關한 規定 : 이에 關해서는 II 章에 . 論者의 見解를 表明한 바 있다.

(5) 一般基準에 關한 規定 : 一般基準(原則)이란 會計情報가 具備하여야 할 共通의 性質을 말한다. 論者는 一般基準으로서 다음의 다섯가지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

① 目的適合性(relevance) : 이것은 다른 어느 基準보다도 優先하는 것으로서 情報나 情報를 傳達하는 行爲이나 그 모두가 하고자하는 行爲 또는 바라는 結果와 有用하게 聯關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② 信賴性(reliability) : 會計情報는 檢證可能性(verifiability)과 不偏性(freedom from bias)을 가지므로서 信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檢證可能性이란 두 사람 以上の 資格있는 사람이 同一한 資料를 處理하는 경우 本質의 類似的한 測定值 또는 結論에 이르도록 하는 可能性을 뜻한다. 그리고 不偏性이란 請事實을 偏見없이 決定하고 報告하는 것을 뜻하며 또한 資料를 處理하는데 이용한 諸技法이 偏見의 介을 排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60) A.A.A., 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Preceding Statements and Supplements (Columbus, Ohio: A.A.A., 1957) p.5.

61) Eldon S. Hendriksen, op. cit., p. 192.

62) A.A.A., Committee on Accounting Concepts and Standards, op. cit., p.6.

63) William J. Vatter, The Fund Theory of Accounting and Its Implications for Financial Repor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pp.17-19.

64) Robert T. Sprouse and Maurice Moonitz, op. cit., p.54.

③ 理解可能性(understandability) : 情報은 그것의 本質的인 意味를 情報의 受領者가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理解可能性은 情報가 計量可能性(quantifiability), 用語意味의 一貫性(consistency), 그리고 比較可能性(comparability)을 가질 때 조장된다.

그리고 比較可能性은 情報가 繼續性和 統一性を 가질 때 조장되게 된다.

④ 充分性(Sufficiency) : 情報은 利用者의 利用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充分한 것이어야 한다. 充分성은 適切한 財務諸表의 選擇, 多應的評價, 重要情報의 公開에 의하여 조장되게 된다.

⑤ 照應性(correspondence) : 照應性이란 事實의 同型的寫像(isomorphic mapping)을 말한다. 情報의 照應性이 크면 클 수록 그 情報의 信賴度는 커진다.⁶⁵⁾

(6) 施行基準에 관한 規定 : 끝으로 會計基準은 前術한 一般基準을 充足하는 情報를 마련하는 節次에 관한 施行基準을 規定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 施行基準은 필요에 따라 會計基準의 基本的 性格을 害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여러가지를 規定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다음의 여섯가지 事項에 대해서는 明確한 施行基準이 規定되어야 할 것이다.

- ① 利益算定基準
- ② 資源變動의 原因別 分類基準
- ③ 資產負債의 評價 및 告知基準
- ④ 原價決定基準
- ⑤ 資本과 利益留保의 區分基準
- ⑥ 諸財務行爲의 告知基準

V. 結 言

本 論文을 通하여 論者가 主張하는 要旨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上場法人등의 會計處理에 관한 規程」은 不必要한 것이며 또한 存在할 性格의 것이 못되는 것이다. 如何한 經濟實體에나 適用possible한 財務會計基準의 制定이 필요하다.

둘째, 制定될 財務會計基準의 性格, 設定方法 및 그 體系와 內容은 IV章에서 詳論되고 있다.

셋째, 會計關係專門家로 構成되는 半官·半民의 基準制定主體를 常設機關으로 組織하고 그들로 하여금 財務會計基準을 制定토록 한다. 새로 制定된 財務會計基準은 잠정적으로 法制化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基準制定主體에게는 會計法院으로서 機能할 수 있는 權限을 부여토록 한다.

65) Eldon S. Hendriksen, op. cit., p. 496.

66) Raymond J. Chambers, op. cit., p. 38 and pp.164—165.

넷째, 現在 組織은 되어 있으나 有名無實한 狀態에 있는 「韓國會計學會」는 學會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會計學者間의 共同努力이 要求된다. 「韓國會計學會」는 前項의 基準制定主體에게 理論研究의 結果를 提供해 줌으로써 우리의 會計實務를 變遷하는 社會環境에 맞추어 改善토록 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다. ASOBAT가 未來會計理論 分野에서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提示하고 있는 (1) 社會·組織·個人의 欲求의 性質, (3) 人間行爲에 미치는 測定의 影響, 그리고 (3) 情報과 測定의 性質에 關한 研究⁶⁷⁾와 그리고 AICPA의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가 提示한 (4) 社會的 「코스트」의 測定 「모델」⁶⁸⁾에 關한 研究는 우리에게도 切實히 要求되는 것이며, 이에 關한 研究는 韓國會計學會가 中心이 되어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67)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op.cit., pp.69-71.

68) AICPA, The Study Group on the Objectives of Financial Statements, op.cit., pp. 53-55.

